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본점 또는 지점등의 이전)”을 “(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점등(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지점”으로,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”를 “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[출장소(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회계처리를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[출장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, “상호저축은행”을 “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점등의”를 “지점의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“지점등”을 “지점”으로, “지점등을”을 “지점을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

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 설치 신고의 접수 및 수리

2의3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

별표 5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마목(종전의 다목)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바목(종전의 라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0조제1항제1호”를 각각 “법 제40조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(종전의 마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0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40조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아목(종전의 바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0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자목(종전의 아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0조제3항제1호”를 “법 제40조제3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차목(종전의 자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40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40조제3항제3호”로 한다.

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1호	3,000
나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3항제1호	1,200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본점 또는 지점등의 이전)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	제5조(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) 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지점등(법 제7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을 이전하는 경우: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</u>	2. <u>지점</u> ----- ----- ----- 법 <u>제7조제4항</u> ----- ----- --
제6조의3(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) ① <u>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.</u>	제6조의3(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) ① <u>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---</u> ----- ----- -----.
1.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(이하 “재무상태표상자기 자본”이라 한다)이 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00 이상[출장소(총리령으로
정하는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
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
회계처리를 하는 영업소를 말
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하는
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]
일 것

2. 3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
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
다.

1. ~ 4. (생략)

5. 법 제11조제1항제4호·제5호
및 제10호의 업무 및 그에 각
각 부대되는 업무만을 취급하
는 출장소(이하 “여신전문출
장소”라 한다)를 영업구역 내
에 3개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
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하까지
설치하려는 상호저축은행

③ 법 제7조제2항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”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
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

-----[출장소]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법 제7조제3항-----

-----기준에 따라 최

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

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-----

된 상호저축은행(이하 “최대주
주변경상호저축은행”이라 한
다)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
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
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
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.
다만,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
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
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
은행은 제외한다.

1. 2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⑦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
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
액을 말한다.

1.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소재지
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
다음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
하여 산정한 금액. 다만, 제2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
하려는 지점등의 개수, 영업구
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
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
-----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법 제7조제4항 -----

-----.

1. ----- 지점의 -----

-----.

-----.

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가. (생략)

나.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

소: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

따른 금액 $\times 0/100$

2.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뺀 금액

가. (생략)

나. 모든 지점등(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등을 포함한다)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,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

가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2. _____

가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제26조(업무의 위탁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 1. (생략) 2. <u>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3. ~ 19의2. (생략) ② (생략)	제26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법 제7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<u>2의2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 설치 신고의 접수 및 수리</u> <u>2의3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</u> 3. ~ 19의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